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생·안전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영업 정지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1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생 · 안전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영업 정지 등	3
※ 참고자료	
1. 식중독 원인 · 역학 조사	11
2.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수행업무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22.

다. 회 부 일 : 2025.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생·안전상 사고 발생 시 즉시 영업 정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교체, 인근 학교와의 공동급식 또는 대체급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조치 등) <u>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u> 1. <u>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u>

현행	개정안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정지 명령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u>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u> 2. <u>학교급식 운영방식의 변경</u> 3. <u>인근 학교와의 공동급식 또는 대체급식 실시</u> 4. <u>그 밖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u>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의 혼입이나 식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¹⁾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매년 전국적으로 20~30건 내외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113	4,773	41	1,426	25	1,365	42	1,773	5	209
2020	13	401	-	-	2	28	11	373	-	-
2021	21	708	7	180	4	106	9	394	1	28
2022	25	1,102	9	320	7	267	6	401	3	114
2023	21	1,027	8	373	4	248	8	339	1	67
2024	33	1,535	17	553	8	716	8	266	-	-

자료: 교육부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중독과 같은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우선 ‘집단급식소’를 정의하면서 학교급식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행정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제71조), 폐기처분(제72조), 시설 개수

1)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명령(제74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²⁾.

□ 또한,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크게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으로 구분되는바³⁾, 전체 학교 12,047교 중 대부분의 학교(11,787교, 97.8%)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학교(260교, 2.2%)에서만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 학교급식 운영 형태별 실시 현황 >

구분	전체 학교 수(교)	운영형태			
		직영		위탁	
		학교 수(교)	비율(%)	학교 수(교)	비율(%)
초등학교	6,201	6,185	99.7	16	0.3
중학교	3,273	3,248	99.2	25	0.8
고등학교	2,377	2,160	90.9	217	9.1
특수학교	196	194	99.0	2	1.0
합계	12,047	11,787	97.8	260	2.2

자료: 교육부

2)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생략)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학교급식법」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 운영⁴⁾에 대해서는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별도로 규정하여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음⁵⁾.

□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의 다른 집단급식소(직영)와 같이 같은 법 제75조⁶⁾에 포함된 영업 정지를 준용하지 않아,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즉시 학교급식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이와 함께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교체, 공동급식 또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참조.

6)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는 대체급식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즉시 운영 정지 명령 및 대체급식 시행 등을 규정하여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급식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19조제1항⁷⁾에 따른 검사 결과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제적으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어 위생·안전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의 영업권을 존중하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현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 이에 따른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등에 따라 원인·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방역당국(시·군·구 등)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학교급식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데⁸⁾,

개정안과 같이 주무부처가 아닌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7) 「식품위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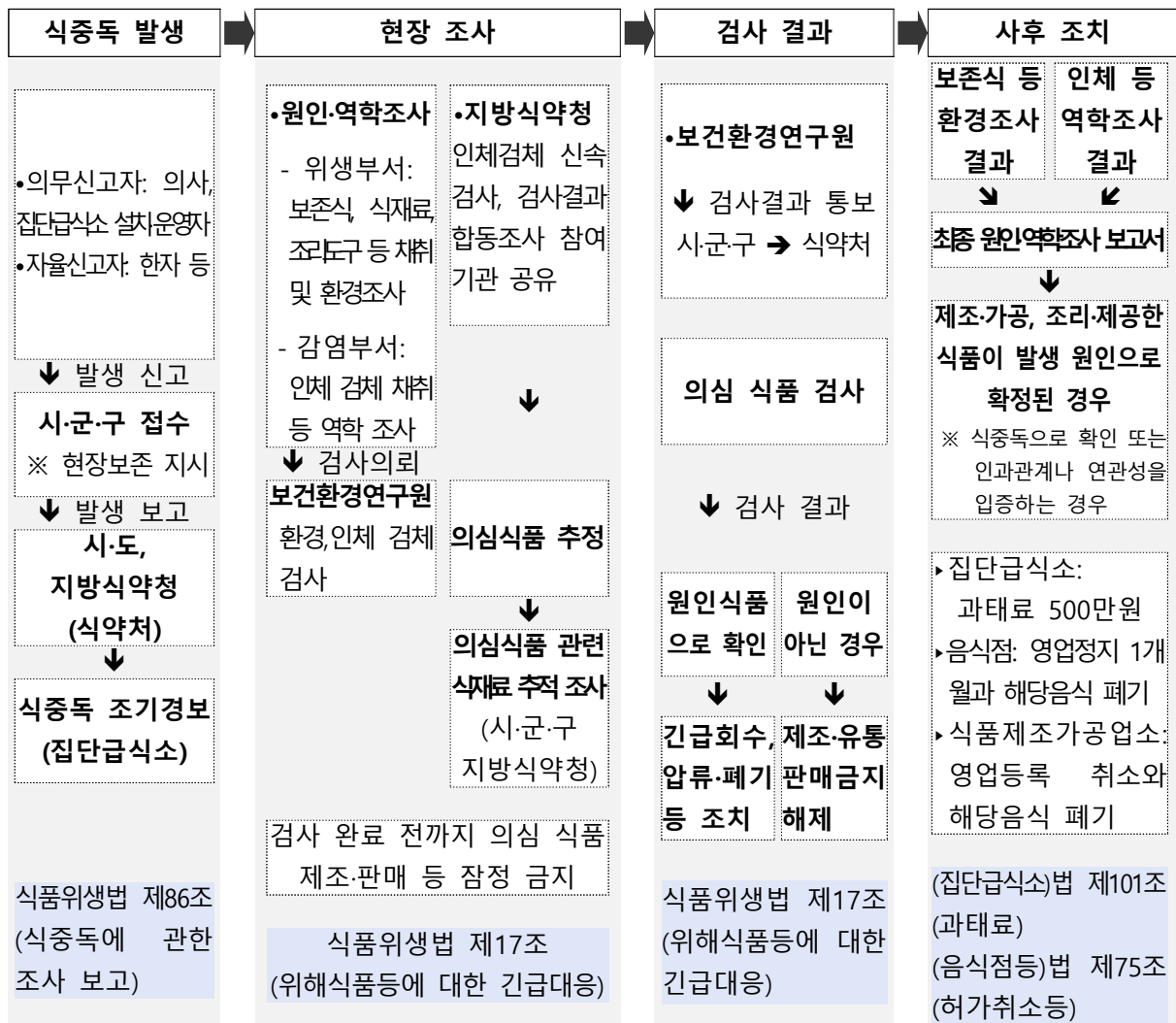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 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8) 「참고자료1: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및 「참고자료2: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수행 업무」 참조.

에 운영정지 명령,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개정안에서 위생·안전 사고 대응책으로 제시한 즉각적인 운영 정지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식중독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원인·역학조사, 검체검사, 식재료 추적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는데, 실제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식중독 발생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절차 >



자료: 「2024년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검토 -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나,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및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등에 따라 방역당국인 시·군·구청 등에서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하며, - 조사 결과 해당 학교나 급식공급업체에서 조리·제공한 식품 등이 발생원인인 경우, 시·군·구청 등에서 이미 급식 중단 요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원인·역학조사 및 사후조치 등 관리체계가 다른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방역당국인 시·군·구청 중심(교육청 협조)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법」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인·역학조사에 따른 원인규명 없이 직접 급식운영 정지명령 및 추가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 법령과 중복문제, 전문성 부재, 현장에서 혼란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청 [울산, 경기, 세종]: 신중검토 - 원인·역학조사 및 사후조치 등은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역당국 주관하여 실시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법에 별도 급식운영정지 및 추가조치사항 신설 시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해석·적용 혼란 우려, 원인규명까지 상당 기일 소요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없이 계약해지 등을 단행할 경우 계약관련 책임문제 발생으로 혼란 우려 [서울]: 일부수정 - 학교와 공급업자의 계약관계에 교육감이 계약해지 및 교체를 명령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 및 계약법령과 충돌 우려,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의심만으로 급식중단 및 계약해지는 법적분쟁 유발, 교육청 차원의 행정조치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문제 발생우려 등 [대구]: 이견없음 - 학교급식 운영정지 등은 법령 개정 이외에도 계약서에 우선 명시되어야 할 것임
○ 대한영양사협회: 일부수정 -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식중독 사고 처리 절차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중복 규정은 불필요하며, 인근 학교 간 공동급식은 식중독 발생 및 학생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므로 대체급식으로만 규정해야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4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02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 운영

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역학 및 환경조사 등을 위해서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원인·역학조사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2인 이상),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15인 이상) 식중독 발생 시 : 식약처(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시 교육청(지원청) 급식 관련 부서 참여

- 2) 50인 미만 식중독 발생 시 :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최초 신고된 환자수가 5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많은 음식점(김밥, 도시락, 뷔페 등)에서 10인 이상 발생 또는 입원환자가 5인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있어 국민건강 상 중대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시·군·구 위생·감염부서는 ① 식약처(043-719-2111) 및 관할 지방청에 즉시 유선 보고, ② 지방청은 식약처(식중독 예방 대응 전문관 등)의 지시를 받아 합동조사 등 실시

식중독 발생 상황		구성
학교(2인 이상), 5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15인 이상) 식중독 발생 시	1개 시설	식약처(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다수 시설, 동일 식재료에 의한 확산 가능	식약처(본부,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필요시 식약처(본부) 업무 지원
50인 미만 식중독 발생 시	1개 시설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시·군·구 동시 발생시	시·도(총괄) 및 시·군·구 원인·역학조사반 * 필요시, 지방식약청의 인력 및 신속 검사처량 지원

03 현장조사 준비

가. 식중독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나. 출동 전 식중독 발생 시설에 현장을 보존하도록 지시한다.

다. 조사대상 시설의 위치정보, 조리(생산) 식품 및 지하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허가(신고)증 수령여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이력 또는 기록 등을 확인한다.

〈업종별 사전 정보 수집 사항〉

구분	공동사항				기타사항
집단 급식소	위치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조리(생산) 식품	영업허가 (신고)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식중독 발생 이력 등	직영 위탁 현황
식품접객업소					-
도시락제조·가공업소					도시락 제공 현황
식재료 공급업소					납품학교 현황

9) 자료: 「2024년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라. 현장조사에 필요한 서류, 증거물, 도구 등 준비한다.

〈상시 비치품목〉

- 1) 1회용 멸균봉지, 채수병(1L-5개)
- 2) 개인 보호 장비(위생장갑, 마스크, 위생복)
- 3) 멸균검체기구(swab 도구, 스푼, 집게 등)
- 4) 환경검체 측정용(세균) 배지 각 5개
- 5) 온도계(디지털온도계 또는 탐침온도계)
- 6) 아이스박스(아이스팩 포함)
- 7) 필기구(네임펜 등 라벨링), 방수 라벨, 테이프,
- 8) 기타(수거증, 수거봉투, 디지털카메라(핸드폰카메라), 계산기 등)

04

식중독 현장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은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서(서식2) 및 원인·역학조사서(서식3), 현장확인 조사표(서식4)를 작성한다.

• 현장 시설·환경 조사 및 기록 확인

- 관리/종사자 현황
- 식재료 납품 내역 확인
- 관리자/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여부
- 학교인 경우 HACCP 모니터링 일지 점검

• 환자 등과 관련된 역학적 조사

- 최초환자 발생 시점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점검

• 식재료, 보존식 및 섭취식품 등에 대한 조사

- 메뉴 및 간식 제공여부 확인
- 메뉴별 식재료 사용 내역
- 메뉴별 작업 과정 점검(식재료 구입·보관·세척·소독·조리 과정 등)
- 조리장 및 시설(냉장고, 창고 등) 위생 점검
- 현장조사 대상 장소 현황(예 : 주방 위치, 식재료 보관 장소 등)
- 조리수 및 음용수 현황 파악(지하수 사용 여부)
- 지하수 출입 여부 상세히 점검(배관 등)

• 조치사항

- 급식중단 권고
- 현장 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 식자재 공급업체 판매기록
- 의심식품 잠정판매금지

※ 발생시설에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등 비협조적인 경우 처벌조항 확인

-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2항 10호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함
-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10호에 따라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 고 2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단계별 수행업무¹⁰⁾

구분	내용	관련 담당
〈1단계〉 발생인지	•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교내 보고 - 식중독 의심 학생은 인체검체 채취 등을 위하여 원인·역학조사반 도착 시까지 귀가보류(관계기관 협의) ※ 평일 방문 수준의 학생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행정실, 학교장 등에 먼저 (상황)보고 • 담임교사를 통한 유증상자 파악(1차 예비조사) - 병결학생과 원인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되, 손들기, 문자발송(주말)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 금지 ※ 2차 확인조사는 협의체 회의 후에 상담조사. 추가환자 발생 시 관계기관회의 개최 • 학교장 주재 대책협의 및 급식 중단여부 협의 - 식중독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급식 잠정 중단	• 학생 → 보건교사 → 학교장 • 학교(장) • 학교(장)
〈2단계〉 발생보고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시·군·구(위생·감염부서), 교육청에 신속하게 보고(유선) - 시·군·구 위생부서는 식약처와 시·도에 지체없이 발생보고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현행화 - 당월 식재료 납품업체 입력여부 확인 및 필요 서류(식단표, 식재료 납품업체 등)를 원인·역학 조사반에 제공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 관계기관 • 시·군·구 위생부서 → 식약처, 시·도
〈3단계〉 원인·역학 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를 위한 준비 ※ 간식으로 제공된 가공식품(원제품) 포함 - 협의체 운영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 규모, 증상 파악) - 설문조사(환자·대조군 조사)는 직접면접법으로 작성. 설문지에 대한 사례적용 타당성 등 확인 - 관계기관에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는 충분히 협의	• 영양(교)사 → 식약처, 식품위생부서 • 학교(장) → 감염부서
〈4단계〉 조사 후 조치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 영양(교)사
〈5단계〉 모니터링	• 유증상 학생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 보건교사 및 교직원 • 영양(교)사

10) 자료: 「2024년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